

의안번호	2208220
의 퇴 인	홍기원의원
회 답 일	2025.4.8.
추계번호	25B0424

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제1항제10호 신설 (주거종합계획의 수립)	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거종합계획(이하 “주거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(제1항) 10.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곳이나 반지하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정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	의무규정

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근거규정
1	안 제5조제1항제10호 신설 (주거종합계획의 수립)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사유

-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주거종합계획에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곳이나 반지하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정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, 개정안에 따라 비주택 등 정비 활성화를 위한 세부 대책이 수립·시행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그런데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되는 비주택 등 정비대상시설의 구체적인 범위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고, 해당 시설의 정비 활성화를 위한 세부 계획이 불확정적이어서 현시점에 시설별 정비비용을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

- 다만, 참고로 국토교통부의 2024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(주거상향지원사업, 2025년 100억원), 비정상적 거처(비닐하우스, 움막, 컨테이너 등) 거주자를 대상으로 이주비(평균 40만원)를 지급하는 사업(이사비 지원사업, 2025년 30억원), 보증금 지원사업(비정상거처 보증금지원사업, 2,550억원)을 시행중임
-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 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III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문지은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문지은	02-6788-4645	mtsophia@assembly.go.k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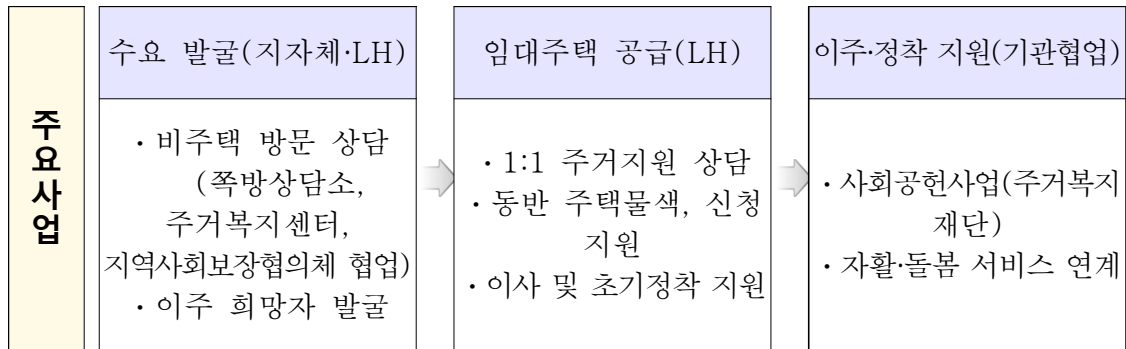
[참고자료]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·이사비 지원사업

1. 사업개요

- (개요) 쪽방·반지하 등 주택이 아닌 거처 거주자에게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여 안정적 주거를 제공하고 이주비도 지원
 - (근거규정) 「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」(국토부 훈령)
- ('24년 목표물량) 총 1.3만호(공공+민간임대)
 - (그간 실적) ('20) 5,502호 → ('21) 6,026호 → ('22) 7,036호 → ('23) 10,671호
- (예산현황) 주거상향지원, 이사비지원, 보증금지원* 등 총 2,680억원
 - (주거상향지원) 지자체, LH를 통해 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하고, 이주상담, 정착 지원 등을 수행(100억원, 일반회계)
 - －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50개소 개소당 1억원(지자체 매칭 50:50), LH 이주지원119센터 50개소 개소당 1억원(국비 100%)
 - (이사비지원) 주거상향지원을 통해 이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이주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이사비 지원(30억원, 일반회계)
 - － 17개 시·도 대상 매칭(50:50), 가구당 40만원 × 1.5만가구 × 보조율 50%
 - (비정상거처 보증금지원) 주거상향을 통해 이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임대료 부담완화를 위해 보증금 지원(2,550억원, 주택도시기금)
 - － 민간임대 5천만원 × 0.5만가구, 공공임대 50만원 × 1만가구

2. 세부 사업 내용

- (지원대상) 쪽방·고시원 등 비정상거처 및 침수 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,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
 - 쪽방, 고시원, 여인숙, 비닐하우스, 노숙인 시설, 컨테이너, 움막, PC·만화방, 침수우려 지하층 3개월 이상 거주자,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, 출산예정 미혼모 등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자, 가정폭력 피해자, 범죄 피해자
 - (자격요건) ①무주택세대구성원, ②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% 이하(1인가구 기준), ③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자산기준* 충족
 - 총자산 2억 4,100만원, 자동차 3,708만원 이하('24년도 기준)
- (지원사항) 지자체·공공기관(LH) 등과 협업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제 발굴하고, 이주·정착까지 밀착 지원
 - (발굴) 정보접근성이 낮은 주거취약계층 특성을 고려하여, 방문 상담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 선제 발굴 및 지원('20~)
 - 지자체 주거복지센터(50억) 및 LH 이주지원119센터(50억)를 통해 수행
 - (이주)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¹⁾하고, 임대 보증금²⁾ 및 이사비·생필품(최대 40만원)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이주비 부담 완화
 - 1) 전용 85㎡ 이하 주택(1인 거주 시 50㎡ 이하), 보증금 50만원 + 월 임대료
 - 2) 공공임대 보증금 50만원, 민간임대 보증금 최대 8,000만원 대출
 - (정착) 주거복지센터(지자체) 및 LH센터(이주지원 119센터) 등을 통해 이주 후에도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수행하여 안정적인 정착 지원



3. 향후계획

□ '24년 목표물량 이주를 위해 취약계층 지원 지속 추진